

# 가 정 통 신 문

"불법찬조금 근절"

대향증 제 2023 - 33호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587 / 학교 홈페이지: www.daehung.ms.kr

교무실: 070-7097-0916,0917 / 행정실: 070-7097-0904 / 팩스: 행정실 031-312-9387 교무실 031-318-2173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교사가 흔들리면 학생도 흔들립니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만듭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대흥중학교의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관련 규정이 교원지위법에 제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현행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 외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교권은 권익주체인 교원에게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일부에서는 교권을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교권남용을 이유로 교권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특정위법행위를 직접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대신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모든 교육주체가 향유하는 공통의 이익이므로, 교육활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교육주체 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객체

교육활동 침해주체	교육활동 침해객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 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침해행위 유형	개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상해 /폭행	상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간접적인 힘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거나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위	- 큰 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잡아서 흔드는 경우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 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부정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경우 - 외압을 이용해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경우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 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 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 위 모욕: 공연히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 한 명에게 특정 교 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생이 여러 사람에게 이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경멸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는 경우
손괴	타인의 물건,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 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 법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불만의 표현으로 학교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경우 -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며 책상, 창문, TV 등 학교의 기물을 망가뜨리는 경우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 례법 제2 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행위	-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 학생이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

불법 정보유통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①사람을 비방할 목 적으로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②공포심이 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 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 -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메일을 통해 교원에 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전화 나 문자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공립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공무)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적극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속이는 것) 또는 위력(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며,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 학 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성적 굴욕 감 또는 혐 오감을 느 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옥감 또는 혐오감을 느 끼게 하는 성희롱의 경우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 적으로 부 당하게 간 섭하는 행 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사에게 수차례 수시로 특별한 용무나 사유 없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교사에게 '시험 범위를 줄여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는 등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그 밖에 학 교장이「교 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교사를 무시하며 학생들에게 교사의 말을 듣 지 말라고 종용하는 경우
에 위반한다 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공무원법」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u>교권(教權)은 존중되어야</u>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3.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그ㅂ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
구분	(시행일: 2019.10.17.)이전	(시행일: 2019.10.17.)이후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교원지위법」제17조
가능한 조치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 내의 출석정지 ⑤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 육 대상자에는 적용 안 됨)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 료 ④ <b>출석정지</b> ⑤ <b>학급교체</b> ⑥ <b>전학</b> ⑦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적용 안 됨)

#### ♡ 조치 결정 시 세부기준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 교원의 임신·장애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 ∞ 과태료 부과

- 침해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참여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나.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한 조치

#### ⋈ 형사 고소·고발

-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에게 징계권한이 없으므로 형사 처벌 법규에 위반하는 심각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고발로서 대응합니다. 이때, 피해 교사가 원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형사고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심의·통지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교원과 침해행위자 모두 희망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외 침해자의 행위를 심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밝히고, 그 결과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4.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 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1)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 2) 학생들의 인성에 위협
- 3)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

#### 나.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

#### ♡ 학교 안전사고 처리 과정

- 학교에서 체육시간, 과학시간, 체험활동 시간 등에서 주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교원은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활동을 계획하나, 학생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학부모와 안전사고의 책임 을 언급하며 해당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는 학부모와의 사이에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 이럴때는 이렇게 자녀가 안전사고가 난 경우

☞ 자녀가 다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다가 목소리가 커져 선생님과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문의하실 때는 학생에게 연락받은 즉시 하시는 것 보다, 마음의 진정을 하신 뒤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공단 급여항목 부분 및 '공제급여지급기준'의 규정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학교와 상의하셔서 안내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 ♡ 학교폭력 처리 과정

- 학교폭력은 사안에 따라 진행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 이럴때는 이렇게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경우

☞ 학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보호자 의견서 및 자녀의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셔서 사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피해학생 학부모님와의 원 만한 화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 성적 평가 과정

- 평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고유한 업무 영역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점수 상향 등 무리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럴때는 이렇게 성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 학교의 안내를 받아 공식적인 성적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 ♡ 학부모 민원 제기 과정

- 학부모 민원은 학부모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담임교사 상담 신청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해야 합니다. 교원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럴때는 이렇게 학교와 생활지도로 인해 갈등이 생긴 경우

☞ 자녀의 학교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먼저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

#### ♡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방법

-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활용: 학교에 대한 기본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얻어 학교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활용, 학부모회 참여,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연수 참여, 공개수업 참여

#### ♡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 방법

학부모가 학교를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학생의 안전, 성적, 교우관계,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 민원 제기 대상을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 학급의 문제는 담임교사에게, 교과의 문제는 교과 담임에게, 업무 문제는 담당 업무 교원에 게 먼저 문제를 설명합니다.
- 담임교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해를 관리자(교장, 교감)와 상담을 합니다.

#### 2) 학생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세요.

-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임장 등을 우선해주시고, 민원 제기로 인해 수업 중인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합니다.
- 학부모의 요청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본인의 자녀만을 위한 요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전화 예절 지키기

학생, 학부모로부터 온 불필요한 메시지, 밤 늦은 시간 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체 촬영 등의 불 법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일어나 지 않도록 예절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용무가 있는 경우 가급적 수업 시간을 피해서 근무 시간 중에 학교 전화번호로 전화해주세요.
- 퇴근 시간 이후에는 학생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전화를 자제해 주세요.
-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내용의 전화는 삼가주세요.
-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 상에서 교원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해주세요.

교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와 존중은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학부모님과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더 힘을 얻게 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3.

## 대 흥 중 학 교 장